

17세기 朝·淸관계와 ‘倭情’의 군사·외교적 활용

김 경 록*

1. 머리말
2. 入關전후 朝·淸관계의 전개과정
3. ‘倭情’사안의 내용과 성격
4. 朝·淸관계에서 ‘倭情’사안의 의미
5. 맺음말

1. 머리말

17세기 명·청교체의 대륙 정세변화로 조선은 대일관계를 새롭게 설정할 필요와 함께, 강국 청과의 새로운 관계정립이 불가피했다. 대륙의 명·청교체, 조선내의 인조반정, 조·일의 새로운 화친성립 등 다양한 국제관계의 변화요소는 조·청, 조·일관계를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시켰다. 조·청관계에 조·일관계의 외교사안이 연계되거나 그 반대로 조·일관계에 조·청관계의 정세가 연관되는 등 국제관계의 변화요소가 더욱 밀접하게 연관됐다.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

국제정세의 변화는 확장과 공존이라는 측면에서 동북아 각국으로 하여금 치열하게 대외관계를 설정하고 외교정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했다. 대륙정세의 변화로 조·청관계가 위기상황으로 전개되면서 조·일관계의 안정이 조선의 국가안위를 위한 선행조건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조선의 대일정책이 결정되었으며, 조·일관계에서 발생한 일을 조·청관계에 의도적으로 활용하여 대청정책을 추진하거나 영향을 받기도 했다.

이와같이 조선을 중심으로 명, 청, 일본의 변화와 관계설정의 요구라는 국제환경에서 국제관계의 현실적이고 유기적인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조선에서 ‘倭情’사안으로 인식했던 요소이다. 국제관계의 냉엄한 현실에서 조선의 안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두고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대외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했던 측면을 ‘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청교체기 이후의 대외관계사 연구는 대륙정세 변화와 조선의 대응을 청조의 入關과 대륙통치의 측면에서 정리한 연구¹⁾, 조선의 국내정세 변화와 연관시켜 고찰한 연구, 임란이후 국교재개과정과 이후 조·일관계의 전개양상을 다룬 연구²⁾ 등이 있어 이 시기의

- 1) 전해중, 『한중관계사연구』 일조각, 1970; 田中建夫, 『對外關係と文化交流』 恩文閣出版, 1982; 劉家駒, 『清朝初期的中韓關係』 臺北 文史哲出版社, 1986; 張存武, 『清代中韓關係論文集』 臺灣 商務印書館, 1987; 최소자, 『명청시대 중한관계사 연구』 이화여자대학출판부, 1997;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김한규, 『한중관계사』 II, 아르케, 1999; 김종원, 『근세 동아시아관계사 연구』 해안, 1999.
- 2) 李鉉淳, 「倭亂後의 對日關係」, 『한국사』 12, 1977; 李敏昊, 「光海君朝의 對日關係考察」, 『용암차문섭교수회갑기념논총』, 1989; 「仁祖朝의 對日關係考察」, 『중재장충식 박사회갑기념논총』 1992; 閔德基, 「朝鮮後期 朝·日講和와 朝·明關係」, 『국사관논총』 12, 1990; 손승철, 「朝鮮後期 對日交隣體制的 改編과 性格」, 『박성수교수회갑기념논총』 1991; 「조선시대 한일관계사 연구」 지성의샘, 1994; 「明·清交替期 對日外交文書の 年號와 干支」, 『大同文化研究』 32, 1997; 李薰, 「朝鮮後期 대마도의 漂流民送還과 對日關係」, 『국사관논총』 26, 1991; 洪性德, 「十七世紀 別差倭의 渡來와 朝日關係」, 『전북사학』 15, 1992; 金靜日, 「1636년 通信使와 朝鮮의 對馬島 인식」, 『淑明韓國史論』創刊號, 1993; 曠宗禎, 「仁祖朝의 對日關係考察」, 『東西史學』 4, 1998; 金泰勳, 「숙종대 대일정책의 전개와 그 성과」, 『韓國史論』 47, 2002; 김문자, 「16~17세기 朝日관계에 있어서의 被虜人 귀환 -특히 여성의 경우-」, 『祥明史學』 8-9, 2003; 한명기, 「임진왜란과 동아시아 질서」,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역사적 전개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밝혀두었다. 그러나 조·淸관계와 조·일관계를 보다 연계시켜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조선의 입장에서 명을 대신하여 대륙의 패자로 등장한 청에 대해 대일본관계의 요소를 활용하여 대淸관계를 원활히 전개시키고자 했던 조선의 대외정책과정과 노력을 다룬 연구는 미흡하다.

본 연구는 명·淸교체기 조선의 대외정책을 잘 보여주는 자료로 『同文彙考』의 ‘倭情’사안에 주목하고, 국가의 공식문서로서 외교문서를 통하여 정치·외교·군사적 의미를 추적하고자 한다. 시기적으로 병자호란이후 효종 초기 조·淸관계의 전개과정을 정리하며, 본격적인 조·일관계에 대한 접근보다는 왜정을 조·淸관계의 외교사안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조·淸관계의 정립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후금이후 청의 대외정책과 통치체제 정비과정을 먼저 정리하고, 조·淸관계의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친 요소에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병자호란의 결과로 발생한 세자의 인질, 방위체제의 해체 등을 극복하기 위한 조선의 노력과정을 중심으로 조·淸관계를 분석한다. 이러한 조선의 노력을 잘 보여주는 왜정사안을 『동문회고』의 체제에서 구성과 내용을 정리한다.

이러한 정리·분석은 조선시대 대외관계를 사건중심으로 점검하는 한계를 넘어 사안별로 종합적인 점검에 일조할 것이다. 국제체제와 외교활동은 개별 국가의 대외정책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데, 대외정책을 분류·정리하고 事案化하여 분석함은 조선후기에 외교문서를 분류·정리했던 점에서 확인된다.

2. 入關전후 朝·淸관계의 전개과정

누르하치이후 후금은 요동경략에 집중했다. 후금시기엔 만주사회의 체질적인 변화를 도모하여 八旗制度를 정착시켰으며, 효과적인 요동지역의 지배를 통하여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고자 했다. 후금의 요동진출에 있어 가장 큰 걸림들은 물론 명이었지만, 경제적인 기반을 공유하던 몽고에 대한 관계정립도 관건이었다. 1619년 요동공격과 함께 후금과 몽고는 대립과 연맹 등 직접적인 관계가 형성되었으며, 후금은 우선적으로 몽고와의 관계개선을 필요로 했다. 蒙古八旗, 外藩의 편성 등으로 후금의 몽고지배체제는 1636년 완성된다.³⁾ 요동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안정시키고 征明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후금은 국호를 淸으로 바꾸고, 연호를 崇德으로 개원했다.⁴⁾

한편, 후금 흥타이지는 누르하치의 여덟째 아들로 1626년 9월에 즉위하자 국가의 면모를 갖추는데 주력했다.⁵⁾ 이후 일련의 국가형태를 갖추면서, 친왕을 분봉하여 征明戰爭 및 체제정비의 주역으로 활용했다.⁶⁾ 흥타이지는 후금의 국가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3) 盧基植, 「後金時期 만주와 몽골의 聯盟 관계」, 『淸史研究』 11, 1999. 2-16쪽. 몽고는 전통적으로 요동의 경제에 의지하는 경제체제를 유지했기에 요동 무역 상실과 대명 경제 관계 방식의 변화는 몽고의 정치체제 변화를 야기했다. 몽고는 明朝와 反後金 협약을 맺고 대명 경제이익(撫賞銀)을 분배받는 扈丹 汗(林丹汗)세력과 이에 벗어난 칼카, 코르친 등의 세력 등으로 분열되기 시작했다. 후금은 먼저 칼카, 코르친 등 각 부족을 대상으로 연맹을 맺은 뒤 몽고 버일러들과의 聯婚을 맺고, 이후 투항해 오는 몽고인에 대하여 賜與방식으로 세력을 확장했다. 또한 몽고에 대한 우대정책으로 라마교를 보호하기도 했다. 후금이 요동전역을 장악한 뒤에는 扈丹 汗의 세력이 급속히 분열되어 후금에 편입된다.

4) 宋正洙, 「淸朝王朝의 成立과 正統性 確保」, 『淸史研究』 8, 1998. 참조. 이는 단순한 국호의 개정이 아니라 주변 민족에 대한 지배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며, 건륭제까지 이러한 과정은 지속된다.

5) 『淸代宗실록』 권28, 천종 10년 4월 을유; 병술; 『淸사고』 권3, 태종2 송덕원년 4월 을유; 병술. 始祖를 澤王으로, 高祖를 慶王으로, 曾祖를 昌王으로, 祖를 福王으로 하고 廟號를 太祖라 하여 福陵을 능으로 했다.

본격적인 對明정벌을 위해 우선적으로 조선과의 관계를 증시했다. 이는 흥타이지의 본격적인 국정운영이 시작된 1627년(天聰 원년) 정월에 조선에 대한 정벌과 椴島의 毛文龍에 대한 견제를 위해 정묘호란을 일으킨 점,⁷⁾ 1636년 4월에 國號를 大清으로 고치고 崇德이라 改元하여 天地에 祭告한 뒤 곧 병자호란을 일으켜 조선에 대한 견제와 조·淸관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했음을 통해 알 수 있다.⁸⁾ 흥타이지가 稱帝하고 追尊하는 자리에서 조선사신이 절하는 것을 거부하자 조선국왕을 질책하는 勅諭를 조선에 보내고, 세자와 인질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⁹⁾

흥타이지는 즉위이후 勅諭를 내려 제 왕족과 귀족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습속과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등 국가의 역량을 최대한 수습하여 대명전쟁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했으며, 내부적인 국가질서를 확립한 뒤 적극적인 征明전쟁을 수행했다.¹⁰⁾ 또한, 정명전쟁의 군사력으로 중요했던 몽골에 대해 효유정책을 시행하여 몽골인으로 투항한 布爾噶都 等에게 世職을 내려주었다.¹¹⁾

6) 『청사고』 권3, 태종2 승덕원년 4월 기축; 정유. 代善(和碩兄禮親王), 濟爾哈朗(和碩鄭親王), 多爾袞(和碩睿親王), 多鐸(和碩豫親王), 豪格(和碩肅親王), 岳託(和碩成親王), 阿濟格(多羅武英郡王), 杜度(多羅安平貝勒), 阿巴泰(多羅饒餘貝勒), 薩哈廉(和碩穎親王), 巴達禮(和碩土謝圖親王), 吳克善(和碩卓禮克圖親王), 固倫額駙額哲(和碩親王), 布塔齊(多羅札薩克圖郡王), 滿朱習禮(多羅巴圖魯郡王), 袞出斯巴圖魯(多羅達爾漢郡王), 孫杜稜(多羅杜稜郡王), 固倫額駙班第(多羅郡王), 孔果爾(冰圖王), 東(多羅達爾漢戴青), 俄木布(多羅達爾漢卓禮克圖), 古魯思轄布(多羅杜稜), 單把(達爾漢), 耿格爾(多羅貝勒), 孔有德(恭順王), 耿仲明(懷順王), 尚可喜(智順王) 등 만주족 친왕, 몽골족장, 歸順明將 등을 정명전쟁 및 요동·요서의 관리에 투입하여 총력전을 전개했다.

7) 『정태종실록』 권2, 천총 원년 정월 병자.

8) 『정태종실록』 권32, 승덕 원년 11월 기미; 을축; 기사; 임신.

9) 『정태종실록』 권28, 천총 10년 4월 을유. 당시 參議 羅德憲, 參判 李廓이 春季禮를 진헌하는 명목의 사신으로 파견되어 있었다.

10) 『淸史稿』 卷3 本紀3 太宗2 崇德元年 5月 丁巳; 庚午; 8月 癸未. 대명전쟁은 英郡王 阿濟格, 饒餘貝勒 阿巴泰, 公揚古利 등이 담당했다가 睿親王 多爾袞, 豫親王 多鐸, 貝勒 岳託, 豪格 등이 주도했다. 『淸史稿』 卷3 本紀3 太宗2 崇德元年 6月 己卯. 豫親王 多鐸으로 하여금 禮部事를, 肅親王 豪格으로 하여금 戶部事를 관장하도록 했다.

11) 『淸史稿』 卷3 本紀3 太宗2 崇德元年 6月 甲戌.

후금은 1626년까지 심양, 광녕 등 요동의 전략적 요지를 차지하고, 명과 대치한 상황에서 조선과 우호관계를 맺어 전략적인 이득을 얻고자 했다.¹²⁾ 후금은 초기에 조선에 대해 경제적 요구와 대명관계의 청산을 요구했지만, 점차 위압적인 전략을 취하여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일으켜 정묘호란 이후 江都約誓¹³⁾, 平壤約誓¹⁴⁾를 체결하고 보다 강압적인 자세를 취했다. 조·청 사이에 체결된 이들 約誓를 살펴보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일으킨 청의 대조선 입장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627년(인조 5) 3월에 체결된 江都約誓는 좌부승지 李明漢이 맹세문을 읽는 것으로 시작됐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⁵⁾

- ① 이 시간이후 화친한다. ② 화친의 맹약을 준수한다. ③ 후금을 적대시 하지 않는다. ④ 兵馬를 정비하거나 城堡를 새로 세워 후금에 대적하지 않는다. ⑤ 후금군이 定州에서 화친을 요구했으니, 平山 이북으로 즉시 철병한다. ⑥ 각자는 차후 압록강을 경계로 상호 침범하지 않는다. ⑦ 王弟는 맹약이 맺어지면 볼모로 하지 않고 귀환한다. ⑧ 兄弟之誼를 맺어 後金이 兄, 조선이 弟가 된다. ⑨ 세페는 인조 스스로 일정량을 정한다.

신속한 후금의 침입에 효과적인 군사적 대응을 하지 못한 조선의 입장에서 서문을 교환하여 화친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12) 김종원, 『근세 동아시아관계사 연구』, 해안, 1999. 84~85쪽.

13) 『인조실록』 권15, 인조 5년 3월 경오. 당시 강도에서 행해진 맹서는 시문적으로 “江都約誓”라고 한다. 같은 날 인조의 서문에는 “約誓”라는 용어가, 후금의 이왕자에게 보낸 인조의 揭帖에는 “信誓”라는 용어가 있는 점에서 조선과 후금사이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왕이 직접 맹서를 하늘에 고하는 의식을 행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교환했다는 점에서 맹약, 회맹 등의 용어로 무난할 것이다.

14) 평양약서의 경우, 정확하게 언제 작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강도약서가 작성된 3월 3일 이후 청의 서문등본이 조선에 전달된 21일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민의 군대가 청천강을 건너간 것이 17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15) 『인조실록』 권15, 인조 5년 3월 경오. 강도에서 행해진 일련의 강화조치는 인조와 대신의 서문, 인조가 이왕자에게 보낸 揭帖 등을 종합하여 파악할 수 있다.

후금의 입장에서는 명과의 관계단절, 후금에 적대적인 군사활동 제약 등 보다 구체적인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강화도에서 조선과 강화를 할 것인가 여부를 두고 후금 조정에서는 명확하게 결정을 하지 못했다.¹⁶⁾ 조선과의 강화결과를 보고받은 흥타이지는 모문룡에 대한 견제를 위해 회군하는 군대 가운데 일부를 義州, 鎭江 등지에 주둔하도록 지시했다.¹⁷⁾ 상호간에 별 이견이 없는 내용으로 체결되었던 강도약서와는 달리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평양약서가 체결됐다.

江都約誓가 체결된 뒤, 철병하는 후금군을 따라 조선의 대표사절로 종실 李覺이 王弟로 假稱하여 심양에 들어갔는데, 阿敏이 이각을 협박하여 평양에서 체결한 것이 平壤約誓였다.¹⁸⁾ 그 요지는 정묘년 평양약서 이후 양국간에 발생하는 도망인에 대해서는 상호 刷還하자는 것과 明使와 동등하게 후금사신을 대우한다는 내용이었다.¹⁹⁾ 두 가지 추가조항 가운데 후금의 주 관심은 쇄환문제였다. 후금의 입장에서는 요동에 거주하던 漢人이나 조선에서 被擄되어 온 조선인이 도망하여 조선에 오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했다.

평양약서는 기본적으로 체결과정에서 후금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체결되었으며, 조선입장에서는 별 이득이 없는 조항들로 구성됐다. 또한, 국왕의 전권적인 승인을 획득하지 않았던 절차상의 문제

16) 『청태종실록』 권2, 천충 원년 3월 신사. 조선원정군의 阿敏이 전황 및 강화여부를 청 태종에게 보고하자 청 태종은 악탁 등 팔기대신을 소집하여 회의했지만 결론을 쉽게 내리지 못하다가 강화를 허가했다.

17) 『청태종실록』 권2, 천충 원년 3월 을유. 만주군 1000명과 몽고군의 2000명 등을 義州에, 만주병 300명과 몽고병 1000명을 鎭江에 주둔시켰다.

18) 『청태종실록』 권10, 天聰 元年 5월 庚午. “至每年 往來之禮 王自知之 自丁卯年 平壤盟誓之後 若有兩國人民 逃歸我國 我卽緝以還汝 我國之滿洲漢人及陣獲朝鮮之人 逃至爾國 爾卽緝以歸我 若隱匿不還 恐釁端漸開 兩國和好之事 又無益矣”

19) 『청태종실록』 권2, 천충 원년 3월 을유. 아민이 평양에서 서문을 다시 개정하고자 했던 것은 명분상으로는 조선군대의 위협 등 조선국왕이 강도약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내용이 귀순인구의 쇄환과 명과 동등한 대우 등인 점으로 보아 강도약서의 내용에 대한 불만이 근본원인이라 볼 수 있다.

등이 있어 이후 조·후금간에 외교적인 마찰을 일으키는 요소였다.²⁰⁾

정묘호란시기, 몽고와의 관계가 정치·군사적인 관계였다고 한다면 조선과의 관계는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중요했다. 후금은 조선의 많은 물자를 얻어 명의 경제봉쇄정책으로 야기되는 곤란을 해결하고자 했다.²¹⁾ 몽고로부터 戰馬를 구입할 수 있어 대명전쟁에 필요한 군사력을 충실화했으며, 조선의 農牛와 농기구 등을 통하여 농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 만주인의 경우, 전쟁수행에 필요한 군사력으로 대부분 충당되는 상황에서 농업생산을 위한 노동력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하자 요동거주 漢人과 조선인을 포로로 하여 노동력을 대처하고자 했다.²²⁾

한편, 병자호란의 결과로서 조·청관계는 청 태종의 詔諭에서 살펴볼 수 있다.²³⁾ 龍骨대가 가지고 온 청 태종의 詔諭에 의하면, ① 規例를 상세하게 정하여 君臣의 信義로 맺는다. ② 明의 誥命과 冊印을 헌납하고, 修好를 끊고, 명의 年號를 버릴 것. ④ 일체의 공문서에 후금의 正朔을 받들 것. ⑤ 長子 및 再一子를 인질로 삼고, 諸大臣은 자제를 인질로 삼을 것. ⑥ 征明의 詔勅을 내리니 步兵·騎兵·수군을 조발할 것. ⑦ 椴島의 공격에 배 50척, 水兵·槍砲·弓箭을 파견할 것. ⑧ 청군의 철병에 犒軍할 것. ⑨ 聖節·正朝·冬至·中宮千秋·太子千秋 및 慶吊 등의 일에 사신을 파견할 것. ⑩ 表箋文의 程式, 칙사에 대해 近送饋使의 禮를 명나라와 동일하게 할 것. ⑪ 軍中の 포로는 쇠환하고, 贖還의 경우는 本主의 편의대로 할 것. ⑫ 내외의 諸臣과 和婚할 것. ⑬ 新舊의 성벽은 수리·신축하지 말 것. ⑭ 조선내의 兀良哈 사람들을 모두 刷還할 것. ⑮ 日本과의

20) 陳捷先, 「略論天聰年間後金與朝鮮的關係」, 『東方學志』 23~24, 1980. 331쪽.

21) 張存武, 「清入關前與朝鮮的貿易(1627~1636)」, 『東方學志』 21, 1979. 187쪽.

22) 김중원, 1999, 위 책. 60~85쪽.

23) 『인조실록』 권34, 인조 15년 1월 戊辰.

무역은 허락하되 사신을 인도하여 조회하도록 할 것 등이며, 나머지 조항은 歲幣에 관련된 것이다.²⁴⁾

청의 입장에서 명과의 관련성을 단절하고 군사적인 파병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했지만²⁵⁾, 세자일행의 인질을 명시한 것은 대조선 정책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1637년 1월 22일 강화도가 함락되자 조선은 각도의 勤王兵을 모집하여 대응했지만, 청군에게 패배하여 결국 인조가 三田渡에서 淸 太宗에게 항복하고, 세자 일행이 볼모로 瀋陽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후 조선은 諸道の 營將을 혁파하고, 정축년에 강제된 詔諭에 의거하여 군사적인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淸의 崇德 연호를 사용하고, 尹集·吳達濟 등 척화파가 심양에서 살해되어 조선국내에서는 반청분위기가 팽배했다. 세자 일행이 심양에 도착할 무렵 청군은 椴島의 명군을 격파하여 西征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청간에는 병자호란이후 형식상으로 조공체제에 입각한 외교관계가 성립되었다. 청 중심 국제질서에서 외교형식은 사행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병자호란이후 조·청간에는 사행관계가 아래 표와 같이 이루어졌다. 각종 節使와 別使를 포함한 사행이 있었음을 보여주며, 이는 청 중심의 조공체제에 조선이 편입되었음을 의미한다.

24) 위 책, 동일 조. 이때 청에서 요구한 물량은 黃金 1백 兩, 白銀 1천 냥, 水牛角弓面 2백 副, 豹皮 1백 張, 茶 1천 包, 水皮 4백 장, 靑黍皮 3백 장, 胡椒 10斗, 好腰刀 26把, 蘇木 2백 斤, 好大紙 1천 권, 順刀 10과, 好小紙 1천 5백 권, 五爪龍席 4領, 각종 花席 40명, 白苧布 2백 匹, 各色 綿紬 2천 필, 各色 細麻布 4백 필, 各色 細布 1만 필, 布 1천 4백 필, 쌀 1만 包를 定式으로 삼았다. 당시 조선에서 감당하기엔 부담스러운 물량이었으며, 청이 입관이후 점차 세폐액은 감소되는 경향이였다.

25) 全海宗, 『清代韓中關係의 一考察』, 『東洋學』 1, 檀國大 東洋學研究所, 1971. 230~231쪽.

〈표 1〉 병자호란 이후 효종초 對淸使行 일람표

연호	출발일자	사행명	정사	부사	서장관
인조16	1638-09-17	謝恩陳奏兼聖節冬至使	朴滿		柳淦
	1638-11-20	正朝使	金榮祖		鄭泰齊
	1638-12-?	問安使	尹暉		
인조17	1639-02-03	奏請使	尹暉	吳竣	鄭致和
	1639-06-11	進賀使	沈悅	林壇	成楚客
	1639-08-17	謝恩使	申景禎	許啓	趙錫胤
	1639-09-13	三節年貢使	權大任	鄭之雨	李元鎭
	1639-11-25	謝恩正朝使	崔鳴吉	李景憲	申翊全
인조18	1640-03-22	謝恩陳奏使	李聖求	鄭廣敬	李棟
	1640-09-16	謝恩三節年貢使	李德仁	安應亨	尹得悅
	1640-11-22	陳奏謝恩使	申景禎	韓會一	李慶相
	1640-12-20	陳奏使	李德仁		李以存
인조19	1641-09-21	三節年貢使	元斗杓	李景嚴	
	1641-11-25	正朝使	崔來吉		李皙
인조20	1642-05-22	進賀陳奏使	李潯	卞三近	洪處亮
	1642-09-21	三節年貢使	南以雄	金耆國	鄭昌胄
	1642-윤11-20	正朝使	尹履之		南溟翼
인조21	1643-05-15	謝恩使	沈器遠	金南重	丁彥瑣
	1643-09-19	陳慰進香使	李潯	韓人及	沈東龜
	1643-11-01	三節年貢使	李濂	曹文秀	金泰基
	1643-11-07	正朝使	鄭良弼		李明傳
	1643-11-24	進賀謝恩使	金白點	吳竣	趙重呂
	1643-12-02	聖節使	徐景雨		李後山
인조22	1644-02-11	謝恩使	李景輿	洪茂績	李汝翊
	1644-05-21	謝恩進賀陳奏使	金白點	李必榮	沈魯
	1644-09-16	三節年貢使	崔惠吉	金守玄	李奎老
	1644-10-24	正朝使	鄭泰齊		吳翹
	1644-11-17	聖節使	金素		洪纘緒
인조23	1645-03-17	進賀兼謝恩使	麟坪大君	鄭世規	成以性
	1645-08-24	謝恩兼奏請使	金白點	洪振道	趙壽益
	1645-09-28	冬至使	李基祚	南銑	李應蕃
인조24	1646-02-26	謝恩兼陳奏使	李景奭	金埜	柳淦
	1646-09-03	謝恩使	柳廷亮	李厚原	朴吉應
	1646-10-16	三節年貢使	呂爾載	崔有淵	郭弘祉
인조25	1647-04-13	謝恩使	麟坪大君	朴遜	金振
	1647-11-01	謝恩兼冬至使	洪柱元	閔聖徽	李時萬
인조26	1648-윤3-25	謝恩使	李行遠	林壇	李惕然
	1648-11-25	三節年貢使	吳竣	金霽	李埜
인조27	1649-03-20	進賀兼謝恩使	鄭大和	金汝鈺	睦行善
	1649-05-14	告訃請諡請承襲使	洪柱元	金鍊	洪璣
	1649-11-01	謝恩兼冬至正朝使	仁興君	李時昉	姜與載
효종01	1650-03-09	進慰進香使	金埜	李濂	李尙逸
	1650-04-22	護行使	元斗杓	申翊全	
	1650-06-09	謝恩進賀陳奏兼三節年貢使	麟坪大君	林壇	李弘淵
효종02	1650-11-02	陳奏使	麟坪大君	李基祚	鄭知和
	1651-01-21	陳慰兼進香使	柳廷亮	朴遜	李晚榮
	1651-03-29	進賀兼謝恩使	韓興一	吳竣	趙衍
	1651-11-04	進賀謝恩兼冬至使	麟坪大君	黃辰	權瑁
효종03	1652-03-04	陳奏官	李壽昌		
	1652-08-17	謝恩使	李時白	申濡	權玲

* 전거: 『同文彙考』 補編, 卷7 使行錄.

형식상으로 청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된 조선의 외교현안은 정치·군사·경제·사회 등 제 분야에서 다양했지만, 핵심 외교사안은 소현세자의 귀국과 해체된 방위체제를 정비하는 것이었다. 심양관의 소현세자는 侍講院과 翊衛司의 世子陪從인원으로 구성된 심양관 인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조선세자의 신분덕택으로 청 고위지배층과 빈번한 접촉을 가져 조선의 分朝역할을 원활히 수행했다.²⁶⁾ 특히 西征軍의 出戰式과 같은 각종 의전행사와 의례에 참석함으로써 다이곤을 비롯한 유력인사와 관계를 맺었다.²⁷⁾

청은 조선에 대해 강압정책으로 향화인, 조선피로인의 쇠환, 속환을 강요하면서 조선 조정내의 반청인사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다. 수시로 반청인사를 봉황성으로 불러 심문했으며, 이 과정에 심양관을 중간에 내세워 일을 처리했다. 또한 2차례의 瀋獄사건을 통하여 심양관과 조선간의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켰다. 심양관의 존재는 인조를 볼모로 할 가능성을 내재한 것으로 2차례 이루어지는 소현세자의 東還에 대한 인조의 불편한 심사를 통해 알 수 있다.²⁸⁾

심양관을 통한 경제적 요구는 인조뿐만 아니라 조선 정부의 불만을 야기시켜 조선의 국론을 분열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조선내부의 불만은 沈器遠사건으로 폭발했다.²⁹⁾ 심기원사건이후 인조는 강력한 반청분위기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대외적으로 入關이후 팽창하는 청의 압력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조선의 반청분위기는 조정에서만 아니라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나타났다.

26) 『정태종실록』 권34, 승덕 2년 4월 갑술. 주요 인원을 살펴보면 文宰 南以雄, 左副賓客 朴簾, 右副賓客 朴潢, 武宰 李起築, 講院 李命雄, 弼善 閔應協, 文學 李時楷, 司書 鄭雷卿, 設書 李瀾, 翊衛 徐擇履, 司禦 金漢一, 司禦 許槿, 侍直 成遠, 洗馬 姜文明, 魏山寶, 具鏊, 醫官 鄭楠壽, 柳達 등이었는데, 체류 8년동안 지속적인 교체인원까지 합하면 당시 주요인물이 많이 포함되었다.

27) 『심양장계』 정축년 6월 21일; 7월 6일; 7월 27일; 무인년 9월 8일.

28) 김용덕, 「소현세자 연구」, 『사학연구』 18, 1964. 449쪽.

29) 지두환, 「인조대 후반 친청파와 반청파의 대립-심기원·임경업 옥사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9, 2000. 108~114쪽.

청군과 함께 정명에 나선 林慶業이 인솔한 水軍이 소극적 전투를 하여 청의 질책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심양관의 대외활동이 적절하게 작용하여 세공미가 경감되었는데, 입관이후 중원의 다양한 물품이 조달되어 청조의 경제적 상황이 호전된 이유도 있지만, 조선의 적극적인 대청외교의 결과라 할 것이다. 한편, 조선의 반청분위기를 감지한 청은 조선파견부대의 교전에 세자를 동참시켰다.

심양관의 입장을 배제한 조선의 친명활동은 이후 지속되었으며, 특히 崔鳴吉의 친명활동은 조·청관계에서 악재로 작용했다. 1642년 2차 瀋獄이 발생하면서 심양관의 분위기는 심옥에 관련된 인물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조·청관계에서 큰 변화의 계기는 청 태종의 죽음이었다. 청 태종의 죽음은 청 조정의 권력관계에서 변화를 초래하여 구왕이 전권을 장악하는 상황으로 발전했는데, 상대적으로 심양관에 우호적이었던 구왕의 등장은 심양관의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3. ‘倭情’사안의 내용과 성격

본 장에서는 『同文彙考』의 개략적인 체제와 ‘倭情’사안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고, 일본관련 문서를 정리한 附編과 ‘倭情’사안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同文彙考』는 정조 12년(1788)에 출간된 初編 60冊과 그 후에 속간된 續編 36冊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初編은 정조 8년(1784) 10월 왕의 하교에 의하여 承文院提調 鄭昌順, 李崇祐가 譯官 玄啓桓-金倫瑞-崔麒齡 등을 董督하여, 4년에 걸쳐 중국-일본과의 事大-交隣關係에 관한 詔, 表, 咨文, 使臣別單, 國書, 書契 등을 項目別, 연차별 분류를 거쳐 편찬됐다.³⁰⁾ 初編

30) 김경록, 「조선후기 동문회고의 편찬과정과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32, 2005. 188~202쪽.

60책은 原編 37책(제1-79권), 別編 2책(제1-4권), 補編 5책(제1-10권), 附編 제16책으로 되어 있는데, '倭情'은 초편의 원편에 편철되어 있다.

原編의 '倭情'사안은 인조 22년(1644)부터 영조 39년(1763)까지의 일본 정세에 관련한 내용을 조선에서 청에 통보한 것으로 10건의 소항목에 56개의 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실제 수록된 문서 가운데 문서명만 수록되고 내용은 다른 사안을 참조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왜정'문서도 『동문회고』의 기재방식을 준수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수록문서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 『同文彙考』 原編 '倭情'사안의 수록 문서표

순번	내용	문서명	발부년일	발부	접수	사신	작성자
1	搜捕宗文賊黨	報島倭情搜捕宗文賊黨咨	인조22(1644.05)	朝鮮國王	兵部		
		報島倭再請審海防求地圖咨	인조23(1645.03.17)	朝鮮國王	兵部		
		報島倭所請三事責諭徑歸咨	인조23(1645.04.18)	朝鮮國王	兵部		
2	轉解漂倭	轉送漂倭勅	인조23(1645.11.11)	淸皇帝	朝鮮國王	祁充格(翰林)	
		陳轉解漂倭奏	인조24(1646.02.26)	朝鮮國王	淸皇帝	李景奭	
		報島倭書契誤稱鞮韞字咨	인조24(1646.12.10)	朝鮮國王	兵部		
3	備倭寇	陳請築城備倭奏	인조27(1649.11.01)	朝鮮國王	淸皇帝	仁興君 瑛	
		飭諭祭兼謝倭情徑奏貢布請緩勅	효종01(1650.01.28)	淸皇帝	朝鮮國王	巴哈納(戶部尙書)	
		飭虛張倭情勅	효종01(1650.07.20)	淸皇帝	朝鮮國王	巴哈納(戶部尙書)	
		謝飭諭表	효종01(1650.10.20)	朝鮮國王	淸皇帝	麟坪大君	尹絳
		攝政王前謝飭諭及賜緞表	효종01(1650.10.20)	朝鮮國王	淸皇帝		李海昌
		辨明倭情飭諭及一表兼謝奏	효종01(1650.10.20)	朝鮮國王	淸皇帝		
		攝政王前辨明奏	효종01(1650.10.20)	朝鮮國王	淸皇帝	麟坪大君 李基祚(右參贊)	
		諭李舅等復職斥和臣等免罪勅	효종02(1651.01.12)	淸皇帝	朝鮮國王	哈阿(尙書)	

		謝降勅兼賜緞表	효종02(1651.03.29)	朝鮮國王	清皇帝	韓興一	黃辰
4	報關白新立	報關白新立例遣信使咨	효종04(1653.03.21)	朝鮮國王	禮部		
		禮部回咨	효종04(1653.05.20)	禮部	朝鮮國王		金錫胄
5	傳報倭情	報島倭來稱吳三桂舉兵咨	숙종01(1675.10)	朝鮮國王	禮部		
		禮部知會曉諭島倭勿爲煽惑咨	숙종02(1676.01.28)	禮部	朝鮮國王		
		報島倭再申前說咨	숙종04(1678)	朝鮮國王	禮部		金錫胄
6	報關白新立	報關白新立例遣信使咨	숙종08(1682.04)	朝鮮國王	禮部	閔興, 魯慎	
		禮部回咨	숙종08(1682.06.25)	禮部	朝鮮國王		
7	報關白新立	報關白新立例遣信使咨	숙종37(1711.03)	朝鮮國王	禮部		
		禮部回咨	숙종37(1711.05.16)	禮部	朝鮮國王		
8	報關白新立	報關白新立例遣信使咨	숙종45(1719.03)	朝鮮國王	禮部		
		禮部知會信行回後曉解倭情人借送眞使咨	숙종45(1719.06.01)	禮部	朝鮮國王		
		報信使未回曉事人不得借送咨	숙종45(1719.11.04)	朝鮮國王	禮部		
		禮部回咨	숙종46(1720.02.13)	禮部	朝鮮國王		
		報差官領送曉事人咨	숙종46(1720.02.26)	朝鮮國王	禮部		
		禮部知會曉事人日本情形奏摺知道咨	숙종46(1720.06.04)	禮部	朝鮮國王		
9	報關白新立	報關白新立例遣信使咨	영조23(1747.11)	朝鮮國王	禮部		
		禮部回咨	영조24(1748.02.06)	禮部	朝鮮國王		
10	報關白新立	報關白新立例遣信使咨	영조39(1763.07)	朝鮮國王	禮部		
		禮部回咨	영조39(1763.?)	禮部	朝鮮國王		

* 전거: 『同文彙考』 原編, 卷78, 倭情; 『仁祖實錄』; 『備邊司謄錄』; 『清世祖實錄』; 『清聖祖實錄』; 『清高宗實錄』

** 항목분류는 관련문서를 묶음으로 정리한 것으로 『동문회고』의 분류방식에 따른다.

*** 문서전달상의 문서(方物表, 方物單, 進呈咨, 方物狀, 總單 등)는 제외함.

일반적으로 조·청관계 외교문서는 조선국왕 명의로 발급되어 청 예부에 전달되지만, 왜정사안의 문서는 대부분 병부로 전달된다. 이는 문서내용이 주로 군사분야에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관련문서는 통상 병부에 전달되는 조선의 자문, 이에 대한

회답으로 조선에 전달되는 병부의 자문, 기타 사후에 발생한 일본관련 내용에 대한 자문 등으로 구성된다.

위 표에 수록된 문서의 내용을 정리하면 효종 4년 이후는 대부분이 關白이 새로 들어서 통신사를 파견한다는 것이지만, 인조대에서 효종 즉위년까지는 야소중문에 관련하여 일본의 정황이 심상치 않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 인조대에서 영조대까지 일본의 정황에 관련하여 다양한 사건과 기미가 포착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淸관계가 처음 시작되는 일정시기까지만 관백의 新立보다 일본의 정황이 불안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관례적인 관백의 신립이외의 사항을 전달하다보니 자연 수록되는 문서의 종류도 많아졌다. 청이 입관한 해부터 지속적으로 報島倭請搜捕宗文賊黨咨(順治元年), 報島倭再請審海防求地圖咨(順治2年), 報島倭所請三事責諭徑歸咨(順治2年), 轉送漂倭勅(順治2年), 陳轉解漂倭奏(順治3年), 報島倭書契誤稱韃靼字咨(順治3年), 陳請築城備倭奏(順治6年) 등을 청에 전달하여 일본의 정황을 자세히 언급했다. 이는 효종 초반이후 정립되는 關白관련 왜정사안의 내용에 비하여 다른 점이다. 물론 이전에 없던 왜정사안을 새로 구성하면서 초기에 사안의 성격에 대한 정립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청에 통보되는 일본의 정황이 별다른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정을 장황하게 부풀려 강조했던 점은 조선의 정치·외교적 의도를 짐작하게 한다.

왜정의 내용검토에 있어 관백의 신립은 통신사의 파견과 연관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청 중심의 국제체제에서 조선은 일방적인 조일관계를 전개하기에 제약이 있었다. 대마도에 파견되는 사행을 제외하더라도 관백을 대상으로 파견되는 통신사는 청에 통보하여 형식상의 제약을 해결했다. 물론 형식적인 측면에 제한되지만, 조·명관계와 동일하게 조·淸관계도 조공책봉관계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은 교린의 차원에서 관백과 통교함에 청에 통보할 필요했다.

그러나 관백이 아닌 대마도주를 대상으로 한 문위행은 청에 통보할 필요가 없다. 조·일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은 내부적인 것으로 정리하고, 조선국왕과 관백의 통교에 해당되는 큰 사건만 왜정에 포함시켰다. 기타 일본을 대리하는 주체로 대마도주를 상징하고 대마도주와 통교하는 내용은 국가의 최고수장 명의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접 청에 통보되지 않았다. 이는 뒤에서 살펴볼 『동문회고』 부편의 내용검토에서 확인된다. 이는 임란이후 조선이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면서 통교체제를 개편하여 조선의 대마도 옹호정책이 실시된 점과 연관되어 구체적으로 問慰行의 정례화, 兼帶의 실시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³¹⁾ 조선은 청 중심 국제질서에서 명대와 달리 보다 주도적인 조·일관계라는 교린체제를 형성하고자 했다.

일본에 관련한 내용은 원편 이외에 별편과 부편에도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의외로 별편에 수록된 倭情사안의 문서는 원편에 수록된 문서보다 앞선 시기에 해당된다. 원래 별편은 散佚이 심한 인조 14년(1636) 이후 淸 入關時(1644)까지의 문서를 殘缺分을 따로 ‘崇德時事’로 整理한 것이기 때문에 원편의 문서보다 시기적으로 앞선다. 원편의 분류항목에 비하여 7개 항목만으로 구성된 별편에 다음과 같은 왜정사안 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31) 손승철, 『조선시대 한일관계사연구』, 지성의 샘, 1994. 199~228. 손승철은 병자통신사 파견이후 대륙정세의 변화에 대응하여 조일 양국간에 탈중화적 교린체제의 성격이 나타났다고 본다. 이러한 견해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조·청관계의 전개와 연관시켜 살펴본다면 조일관계가 가지는 교린체제의 성격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표 3〉 『同文彙考』 別編 倭情事案의 수록 문서표

순번	내용	문서명	발부년일	발부	접수	
1	報倭情	報日本吉伊施端作變及館倭動靜咨	인조16(1638.03.)	조선국왕	병부	
		報日本誅滅施端餘黨咨	인조16(1638.05.25)	조선국왕	병부	
2	遣使日本	報島倭來請信使緣由咨	인조20(1642.02.24)	조선국왕	병부	
3		兵部知會詳閱日本情形咨	인조20(1642.04.01)	병부	조선국왕	
4		因致賀致祭兼察情形發遣信使咨	인조21(1643.02.01)	조선국왕	병부	
5		兵部知會遣使日本詳察情形咨	인조21(1643.03.03)	병부	조선국왕	
6			報信使回還及倭國聞見情形咨	인조21(1643.12.22)	조선국왕	병부
7						

* 전거: 『同文彙考』 別編, 卷4, 倭情.

** 항목분류는 관련문서를 묶음으로 정리한 것으로 『동문회고』의 분류방식에 따름.

『동문회고』의 附編은 일본과의 내왕문서가 수록되었으며, 14개 항목으로 분류되었는데 ‘陳賀’ ‘漂風’ 등의 용어를 原編에서의 ‘進賀’ ‘漂民’과 辨別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들 항목과 수록 책수는 陳賀(권1), 陳慰(권2), 告慶(關白事, 권3), 告慶(島主事, 권4), 告訃(關白事, 권5), 告訃(島主事, 권6), 告還(권7), 通信(권8~9), 進獻(권10~21), 請求(我國事, 권22), 請求(日本國事, 권23), 約條(권24), 邊禁(권25), 爭難(권26), 替代(裁判事, 권27), 替代(館守事, 권28), 漂民(권29~35), 雜令(文書式附, 권36)으로 구성되어 있다. 附編의 문서는 인조 22년 이전의 것도 적지 않으며, 특히 ‘約條’에는 세종 25년(1443)에 通信使를 파견하여 對馬島主와 歲遣船數를 約定한 것에 관한 문서도 있다. ‘雜令’에 이어서 ‘文書式’이 附載되어 있는데, 이는 단위 사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분량이 소략하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에 관련된 문서이지만, 원편의 왜정과 부편은 전혀 다른 목적과 체제로 구성되었다. 원편의 왜정은 기본적으로 청에 대한 일본정세의 전달목적으로 편제된 것으로 조선국왕의 명의로 청 황제나 예부·병부로 전달된 문서를 모은 것이다. 이에 비하여 부편은

조·일간에 발생하는 외교관계를 원편의 체제를 모방하여 작성했다. 왜정이 조·청관계를 대변하는 문서라면 부편은 조·일관계를 대변하는 문서이다.

이상과 같이 『동문회고』에 수록된 외교문서는 발급명의회와 접수명의회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국가의 공적 외교정책을 반영하는 외교문서는 발부명의회와 접수명의회를 중심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이는 문서의 주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청은 인조 22년 4월에 入關하여 북경을 점령하는 등 중원장악을 본격화했다. 청의 북경입성은 조선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후 조선의 대청외교에 변화를 초래했다. 또한, 인조 22년을 전후한 시기에 다수의 한인이 국경을 넘어 조선으로 들어왔는데, 이들의 송환 문제가 조·청간에 외교사안으로 등장했다. 주로 심양에서 도망한 漢人들로 조선은 이들을 국경에서 체포하여 특별히 領將을 차정하여 심양으로 압송했다.³²⁾ 한편, 청은 조·일관계에 대해 경계했는데, 조선에 파견되는 일본사행의 규모, 임란시 전황, 일본을 둘러싼 조·명관계의 전개과정 등을 세세히 소현세자에게 질의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은 통신사 파견사실을 청에 통보하여 외교적인 사단을 방지하고, 청의 일본사정 파악 노력에 대해 대비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³³⁾

청의 입관을 전후한 시기에 대마도주는 差倭 原城長을 파견하여 조선에 예수 宗文에 관련한 書契를 전달하고, 조·일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주장했다. 이때 전달된 서계는 예수 종문의 黨이 조선과 중국 사이에 있는 里菴浦에 거주하므로 조선에서 잡아 일본으로 보내도록 요구했다. 당시 압록강, 두만강을 비롯한 국경지역은 삼을 깨기 위한 범월이 수시로 발생하여 조청간의 외교사안으로 등장하기도

32) 『인조실록』 권45, 인조 22년 5월 경술; 신축. 심양에서 도망쳐 碧團鎮에 정박한 한인 9명을 僉使 金南鳳이 체포하자 義州府尹이 領將을 차정하여 심양으로 압송했다.

33) 『인조실록』 권43, 인조 20년 7월 갑신; 권44, 인조 21년 1월 무오; 5월 을사.

했다. 인조 22년 7월에 일본선박 3척이 국경지역에 표류하자 여진족이 潛蓼 목적으로 유인하여 살해하고 배를 불태우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진족은 일본선박의 물품을 심양으로 옮기고자 했으며, 조선은 향후 이 사건이 조·청, 조·일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했다.³⁴⁾

이 시기 조선은 내부적으로 심기원 반란사건 등 병란이후 통치체계의 불안을 노출했는데, 이는 조선지배층의 대청관계에 대한 불만이 심각함을 보여주며, 외부적으로 세자일행의 귀국이 당면과제였는데, 인조의 의구심이라는 변수가 있기도 했다. 청사가 조선에 출래하면 세자의 귀국을 요구하는 정문을 전달했는데, 청사는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³⁵⁾

한편, 조선후기의 대일관계는 1636년 병자통신사 파견을 전후하여 새로운 교린체제로 개편되어 대륙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조·일 양국의 상호공존을 모색한 새로운 외교체제로 평가되기도 한다.³⁶⁾

인조대이후 조·일간에 일본에서 파견된 외교사행으로 임시사절인 ‘差倭’가 있었다. 이 제도는 조선전기에는 없었던 제도로 기유약조 체결을 위한 사절에게 ‘도주차왜’라는 명칭을 붙인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막부나 대마도에서 일어나는 각종의 일을 통보하거나, 통신사에 관계된 외교교섭, 조선의 국왕이나 왕비서거에 弔意 표시 등 막부가 이전까지 행하던 외교교섭을 대마도주가 대신하여 해결

34) 『인조실록』 권45, 인조 22년 5월 무신; 7월 갑오; 8월 계해. 也春의 추장 長道가 왜인 11명을 심양으로 압송하다 慶興·慶源·穩城 訓戎 등지에서 양식을 조선에 요구하여 조선은 포로된 왜인이 심양으로 옮겨지는 것을 확인했다; 『인조실록』 권45, 인조 22년 8월 무인. 부산 왜관에서 조선에 표류한 왜선을 발견하지 못했는가? 문의했으며, 조선은 청이 일본과 직접 통호를 희망하여 왜인을 쇠환해 보낸다면 조선의 외교적 입장이 곤란할 것을 염려했다.

35) 『인조실록』 권44, 인조 21년 11월 기사. 인조는 정축조약에서 국왕이 유고한 뒤에 세자를 보낸다는 조항을 엄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조실록』 권45, 인조 22년 6월 계해.

36) 손승철, 『조선시대 한일관계사연구』, 지성의샘, 1994. 227쪽.

했는데³⁷⁾, 조선은 차왜나 別差倭³⁸⁾를 통하여 일본 국정 탐색의 기회로 삼았다. 인조대에 접어들어 서식개정, 1636년 임란 후 처음으로 ‘通信使’의 정식명칭을 가진 사절의 파견, ‘問慰行’의 정례화, ‘八送使’의 정기사행, ‘差倭’의 공식적인 내왕, ‘兼帶’제도의 성립 등 조·일관계가 조선전기와 달리 새로운 교린체제로 정비되었다.³⁹⁾

조선 내부적으로 일본의 정세변화에 주목하여 대일본 외교문서에 명의 연호를 사용했다가 인조 13년 이후 일본이 사용을 거부하고, 예조를 ‘閣下’라 칭하다가 ‘足下’로 변경하자 일부 위협요소로 판단하기도 했지만⁴⁰⁾, 심각한 위협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당시 대일관계에 대한 인식은 최명길의 箭子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최명길은 교린의 道는 定式에 의거하되 일과 때가 다르면 勢에 따라 변통할 수 있으며, 舊例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는 입장에서 보국 안민을 우선시 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통신사의 파견에 관련하여 대마도 내부의 불화와 璘書堂의 승려가 대마도에 파견되어 문서를 관장하는 상황에서 도주의 안전이 조선 남변의 안전이라고 보았다. 결국 대마도주의 입장을 옹호함으로써 조일관계의 통로를 일원화시키고, 관백의 대리인으로 인정하고자 했다.⁴¹⁾

조선의 대일정책이 변화된 근본원인은 조·청관계의 변화였다. 형제관계가 군신관계로 전환되고, 국왕이 치욕을 당하고, 세자가 인질이 되는 상황에서 조일관계의 안정은 국가안위에 절대적인 선행조건이었다.⁴²⁾

37) 손승철, 1994, 위 책, 223쪽.

38) 홍성덕, 「17세기 별차왜의 도래와 조일관계」, 『진북사학』 15, 1992, 109쪽. 연례송사를 제외한 모든 왜인을 差倭로 규정하고, 외교의례를 수행하고 조선으로부터 사행으로 인정받은 차왜를 別差倭로 분류했다.

39) 손승철, 1994, 위 책, 199~206쪽.

40) 『인조실록』 권20, 인조 7년 4월 을사; 권31, 인조 13년 11월 계축; 12월 계사.

41) 『인조실록』 권33, 인조 14년 7월 을축.

42) 『인조실록』 권31, 인조 13년 11월 계축; 권32, 인조 14년 6월 경인.

인조 16년 1월에 差倭 平成連이 전달한 別錄은 7조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⁴³⁾, ① 교역물화가 적어진 이유, ② 조선사신은 上壇 사이에서 절하는데, 일본사신은 모래밭에서 절을 하는 예를 개선할 것, ③ 쌀과 콩을 내려줄 때 ‘賜’자를 쓰지 말 것, ④ ‘封進價’를 사용하지 말 것, ⑤ 서한에서 ‘對馬島’를 ‘貴州’로 고칠 것, ⑥ 使船이 정박하는 곳을 돌로 쌓아 풍파를 방지할 것, ⑦ 관사를 개축할 것 등이었다. 일본의 요구를 접한 인조는 別錄 7조를 청나라에 보내 倭情으로 통보할 것을 주장하는 등 일본의 정세변화에 대해 경계했다.⁴⁴⁾

일본의 정세, 즉 왜정에 대한 조선의 반응은 큰 위협으로 인식하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인 조·일관계의 유지라는 틀 속에서 조·淸관계와의 관련성에 주목했다. 오히려 왜정을 활용하여 조·淸관계를 개선하고자 했다. 인조 16년 청의 지원병 파견요구를 해결한 최명길은 지원병 파견 자체가 조선에 대한 의구심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했다.⁴⁵⁾ 조선은 조·일관계에서 등장하는 예수증문에 관련한 사건을 수시로 청에 통보함으로써 청의 군사적 요구를 무마하면서 청·일 교류의 길을 차단하고자 했다.⁴⁶⁾ 집의 趙綱과의 대화를 통하여 인조가 구상하고 있었던 조선의 대외정책방향이 가늠된다. 조경은 誠信을 가지고 교린하여 국세를 웅장하게 할 것을 주장하고, 구체적으로 일본과 화친한 형세를 이용하여 청을 압박할 것을 제시했다.⁴⁷⁾ 청에 대한 굴복을 되갚고, 명과의 관계를 은밀히 진행하면서

43) 『인조실록』 권36, 인조 16년 1월 병술; 계사. 당시 평성연은 別錄의 전달 이외에 조선에 표류한 일본인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받아가기도 했다.

44) 『인조실록』 권36, 인조 16년 1월 경인; 3월 갑신; 2월 신축.

45) 『인조실록』 권36, 인조 16년 2월 갑진; 3월 계미; 권38, 인조 17년 3월 임오. 別錄 7조 등으로 인하여 일본의 정세가 변화됨을 감지한 조선은 병자호란으로 인한 조선의 사정을 일본에 알려 일본의 반응을 살피고자 했지만, 인조의 강력한 반대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46) 『인조실록』 권36, 인조 16년 3월 병자; 권43, 인조 20년 2월 계해. 조선은 왜차가 청에 대한 일을 언급하면 일본이 조선을 탐문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청과 통교하려는 일본을 회유함으로써 조·일우호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다.⁴⁸⁾

조·명관계에서 일본의 정세변화를 불규칙적으로 명에 전달되었지만, 이는 임진왜란 이후의 경향성이었다. 요동병력을 중심으로 파병이후 화친논의에 대한 명확한 과정이 보고되지 않자, 만력제는 도찰원으로 하여금 왜정과 군무 및 각 지방의 사의를 점검하도록 했다. 도찰원은 요동도사에 憲牌를 보내어 조선의 상황을 통보하도록 지시했으며, 요동도사는 조선에 자문으로 왜정을 통보하도록 요구했다. 조선은 이에 상세한 내용을 정리하여 왜정을 통보했다.⁴⁹⁾ 이처럼 전쟁기간 및 전후에 일본의 정세를 명의 요구로 불규칙적으로 통보했지만, 조·청관계처럼 정식 외교사안으로 정립되지는 않았다. 인조말엽에서 효종초반의 사례를 통하여 명대와 달리 청대에 조선의 외교사안으로 왜정을 인식하고 이를 체계화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4. 朝·淸관계에서 ‘倭情’사안의 의미

북경입성이후 청은 수도를 북경으로 옮기고, 명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기 위해 조선에 대대적인 지원병을 요구하고, 명에 투항한 임경업에 대한 처리문제 등으로 조선을 압박했다.⁵⁰⁾ 청의 西征에

47) 『인조실록』 권40, 인조 18년 5월 기축.

48) 『인조실록』 권36, 인조 16년 5월 을해.

49) 『선조실록』 권46, 선조 26년 12월 갑술; 『西厓集』 권2, 咨文, 遼東咨甲午九月.

50) 『인조실록』 권45, 인조 22년 6월 계미; 7월 기축; 『同文彙考』 原編, 卷7, 進賀1, 甲申 頒入燕勅. 공식적으로 순치제는 산해관을 통과하면서 ‘頒吳三桂出降勅’을 조선에 전달하여 청의 위세를 과시하고자 했으며, 연이어 ‘頒入燕勅’을 반포하여 중원의 주인임을 천명했다. 穎王이 주도하는 서정군이 북경을 점령하자 투항인민이 몰려들었고, 이자성의 군대가 격퇴되었음을 자세히 언급하고, 장차 영왕이 內

참전했던 조선병력이 귀국하고, 이자성군대를 격파한 사실을 통보하는 청의 선유가 전달되자, 조선은 북경으로 천도를 축하하는 사신을 파견하여 대청관계를 개선하고자 했다.⁵¹⁾ 조선은 인조 22년 5월에 청의 입관을 진하하고 심기원사건에 관련한 사행을 파견했는데, 謝恩進賀兼陳奏使 洛興府院君 金自點, 議政府左參贊 李必榮, 서장관은 沈廔 등이었다.⁵²⁾ 왜정자문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사은사 김자점의 구체적인 외교활동을 통하여 왜정자문을 청에 전달함으로써 목표했던 바가 무엇인가 살펴보자. 김자점의 사행명은 謝恩進賀兼陳奏使로 사은, 진하, 진주를 외교목적으로, 지참했던 외교문서는 ‘賀入關表’, ‘賀入燕京表’, ‘兼賀入關入燕緣由咨’, ‘謝降勅表’, ‘陳討逆奏’, ‘報島倭請搜捕宗文賊黨咨’ 등이었다.

‘진하’는 ‘賀入關表’, ‘賀入燕京表’, ‘兼賀入關入燕緣由咨’로 구성된다. ‘賀入關表’는 순치제가 산해관을 넘어 북경에 입경한 뒤 천하에 반포한 ‘頒入燕勅’에 대한 진하표로 ‘賀入燕京表’와 함께 전달됐다. 조·중관계의 문서체계에서 황제의 조서와 칙서가 반포되면 반드시 표문을 올려 답해야 했다. 對 황제문서로 두 개의 표문과 함께 對 예 부문서로 김자점이 入關에 대한 진하와 入燕京에 대한 진하를 겸행하게 된 연유를 기재한 ‘兼賀入關入燕緣由咨’가 전달됐다.⁵³⁾

‘사은’과 ‘진주’는 ‘謝降勅表’, ‘陳討逆奏’로 구성된다. 심기원 반란 사건을 진압하고 인조가 청 戶部에 쇄환인 관련사항과 함께 반란사건을 기재한 ‘請捕送逆黨咨’를 전달하자 호부의 보고를 받은 순치제는 於思介를 조선에 보내어 ‘諭免刷逃口及嚴查逆黨勅’을 전달했다. ‘謝降勅表’는 순치제의 칙서에 대한 사은표로 전달된 것이며, 순치제

外諸王, 貝勒, 貝子, 公, 固山額真, 羈章京을 파견하여 명군과 이자성군을 추격중임을 통보했다.

51) 『정세조실록』 권5, 순치 원년 5월 무자; 『인조실록』 권45, 인조 22년 7월 기축.

52) 『인조실록』 권45, 인조 22년 5월 무신.

53) 『同文彙考』 原編, 卷7, 進賀1, 甲申 頒吳三桂出降勅.

에게 심기원 반란사건을 본격적으로 기재한 ‘陳討逆奏’를 전달했다.⁵⁴⁾

기타 ‘報島倭請搜捕宗文賊黨咨’는 동래부사의 장계에 근거하여 일본의 요구사항과 예수 중문의搜捕상황을 병부에 통보한 것이다.⁵⁵⁾ 본 문서는 넓은 의미에서 진주부분에 포함되지만⁵⁶⁾, 성격상 다른 점이 있다. 일본 정세에 대한 통보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진주사안에 포함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요구사항이나 주장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사안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별도의 사안으로 구분하여 왜정사안으로 정리한 것이다. 또한, 김자점의 사행명에서 왜정관련 사항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김자점의 사행목적 달성에 왜정문서를 간접적으로 활용한 점에서 왜정사안의 정치·외교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공식적인 사행문서의 전달 이외에 김자점은 심양에서 실질적인 조선의 외교목적을 청나라에 전달했다.⁵⁷⁾ 첫째, 소현세자 일행의

54) 『同文集考』原編, 卷33, 陳奏1, 甲申 請捕送逆黨咨.

55) 『인조실록』 권46, 인조 23년 4월 병진. 당시 비변사는 동래부사의 장계를 바탕으로 差倭 藤智繩이 요구한 3가지 일이 島主가 關白에게 공치사를 하려는 뜻으로 파악하고, 지도를 한 본 그려 주었다. 인조 23년(1645)에 차왜 藤智繩이 대마 도주가 보낸 書契를 가지고 東萊府使 李元鎮에게 세 가지 일을 요청했다. ① 예수 교도들이 唐船을 만들어 타고 조선 지방 해로를 경유하여 일본으로 들어가려 하니, 조선에서 그들을 수색하여 체포해 달라는 내용으로 대마 도주가 조선의 조그만 배를 빌어 타고 친히 좌우 연해의 浦津을 자세히 살펴서 일본 關白에게 보고하는 데 대비하도록 해달라는 것, ② 조선의 地圖를 얻어 여러 島嶼의 이름을 알아서 증거로 삼게 해달라는 것, ③ 조선의 水使가 이 일을 관장하여 모든 浦口에 외국 선박이 있는지 여부를 탐지하여 글로 적어 보내주어서 후일의 참고에 대비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56) 김경록, 「조선초기 중계변무의 전개양상과 대명관계」, 『국사관논총』, 2006, 156~159쪽. 진주의 내용을 『동문회고』 수록 기사를 기준으로 奏請, 陳奏, 辨誣, 陳告로 구분할 수 있다. ① 奏請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내세우는 것으로 주로 書冊, 衣服 등 물품을 요구하는 경우, 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冊封의 요청 등이다. ② 陳奏는 외교상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 주문하는 것으로 각종 사건이나 현안에 대한 요구이다. ③ 辨誣는 誣告에 대해 사실관계를 변명하는 것이다. ④ 陳告는 중국에 통보하는 내용으로 告誨가 대표적이다.

57) 『인조실록』 권45, 인조 22년 7월 임자.

귀국을 요구하는 公文을 제출하고자 했으며, 이에 청나라 역관 鄭命壽는 북경으로 천도후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청의 입장을 전달했다. 소현세자의 귀국문제는 당시 조·淸관계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세자가 인질로 존재한다는 위험요소뿐만 아니라 대일관계 등에서 국가의 위신상 세자인질의 존재는 큰 문제였다. 또한, 소현세자의 심양관활동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면서 인조를 비롯한 조선 지배층의 불안은 높아졌기 때문에 귀국을 요구했다.

둘째, 세폐문제의 해결을 요구했다. 과도한 세폐량뿐만 아니라 세폐운반에 따른 피해를 언급하면서 개선을 요구하자 청은 북경으로 천도 후에도 세폐는 심양까지만 운반하고, 사신은 표·전문을 비롯한 외교문서만 지참하고 왕래하도록 변경했다. 심양관에 있는 신표의 일부를 귀국할 수 있도록 요구했는데, 청은 논의 중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특히, 사은사 김자점이 倭情자문을 병부에 전달하자 순치제는 일본 정세변화에 주목하고 조선으로 하여금 변방의 방비를 엄중하게 하도록 申飭했다. 황제가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지만, 왜정에 대해 관심을 보였던 점을 통해 왜정을 활용하여 조선의 실질적인 외교목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김자점 일행이 심양에서 사행활동을 종료하고 귀국한 것은 8월이며, 이로부터 6개월 후 소현세자와 그 일행은 귀국했다. 실질적으로 청의 입장에서 조선이 청에 보여주는 우호적 외교활동은 그리 많지 않았다. 세자일행의 귀국이라는 결과는 물론 다양한 요소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외교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조·명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를 준용 이외에 새로이 왜정이라는 외교사안을 등장시켜 강조했던 점이 일정하게 조·淸관계에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조 27년(1649)의 왜정사안은 조선의 이 시기 대청, 대일본

외교정책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己丑 陳請築城備倭奏”, “飭諡祭兼謝倭情徑奏貢布請緩勅”, “飭虛張倭情勅”을 비롯한 30여 건의 문서로 구성된 기축년 왜정항목은 왜정을 어떻게 대청관계에 활용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⁵⁸⁾

순치제 초반부터 전개된 남명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는 청조의 증원통치에 큰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중앙정계의 권력쟁탈이 벌어져 섭정왕 다이곤을 중심으로 새로운 재편이 추진되었다. 조선은 청 권력변화에 주목하여 자문에 ‘皇父攝政王’이라 칭한 것으로 섭정왕의 권세가 강력함을 파악했다.⁵⁹⁾ 또한, 북경을 중심으로 장악한 북중국에 대한 초무정책이 필요했다. 변발의 시행 등으로 한인의 반발을 초래하여 각종 사회불안이 고조되고, 張獻忠의 大西政權, 항장들의 반청운동 등으로 혼란스러웠다. 대대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한정된 팔기군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정복지를 장악하고자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몽고, 요동, 조선에서 반청의혹이 제기되면 강한 압박을 통하여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고자 했다. 청의 공세적인 대조선정책은 아래 표와 같이 출래한 청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표 4〉 인조후반(인조 21년~인조 27년) 出來淸使 일람표

年號 (서기)	日字	使行日程				使行構成		文 書
		牌文	渡江	入京	回去	正使	副使	
인조21 (1643)	03.03	03.05	03.07	03.25	04.06	太平古 (戶部院中)	楊方興(博氏)	諭囚斥和臣斬高忠元勅
				05.		李昭漢(陪臣)		量減年貢原釋囚人勅, 減勅使餽遺勅
	07.26			08.16		瀋陽陪臣		頒蒙古歸順勅
	08.26	09.01	08.30	09.05	09.10	於思介 (博氏)	割送可(右侍郎)	頒崇德遺詔
	08.26	09.09	09.22	10.08	10.20	陳國 (戶部丞政)	正剛(國史院), 鄭命壽	頒順治登極詔, 賜物勅

58) 『同文彙考』 原編, 卷78, 倭情, 己丑 陳請築城備倭奏.

59) 『인조실록』 권50, 인조 27년 2월 임인.

	09.15																頒崇德減歲幣定勅例 遣詔勅 賞擒獲漢船官兵勅
	09.15	不遣			1644 01.20	02.19	孫太 (護行上將)		佛叟(次將)								
인조22 (1644)	04.11	不遣	04.18	04.26	05.03		於思介 (博氏)		鄭命壽								免刷逃查逆黨勅
	05.01	不遣	05.22	06.01	06.08		波音所 (博氏)		夫音所(博氏)								頒吳三桂出降勅
	05.16								〃								定燕京勅
	10.10																建國號紀元詔
	10.25																尊諡崇德詔
	11.19	12.06	1645 01.25	02.18	03.04		藍所伊 (禮部侍郎)		席所, 鄭命壽								遣歸世子船運米糧敘 用罷黜官員量減歲幣 三節並貢勅
인조23 (1645)	03.14	04.05	05.05	05.21	06.02		亞赤(戶部郎中)		羅車(刑部郎中)								護送大君勅使
	05.29	不遣	06.24	윤 06.04	윤 06.15		興能 (工部尙書)		石大理(攝政王一等 近侍), 鄔黑(啓心郎), 鄭命壽								慰昭顯世子薨勅, 賜祭世子文, 攝政王慰昭顯世子薨 書, 致祭世子文
	11.09	11.27	12.09	12.28	1646 01.16		祁充格 (內翰林)		朱(禮部郎中), 谷兒馬紅(鄭命壽)								冊封世子誥, 誥命彩幣勅, 轉漂浮倭勅
인조24 (1646)	05.05			06.24			謝恩使										出送林慶業勅
인조25 (1647)	01.16	02.06		02.28	03.13		布黨 (啓心郎)		伊(內翰林秘書院學士) 谷(戶部主事)								飭貢幣疎玩勅
	07.25	08.26	09.06	09.30	10.17		鄔黑 (啓心郎)		毛(蝦), 庫(蝦), 鄭命壽								飭迎勒達禮仍減年貢 勅
인조26 (1648)	01.12	02.04	02.15	03.04	03.12		額(內翰林)		哈(蝦), 谷(戶部主事)								勅行除弊定例勅
	11.11	12.10	12.28	01.20	02.06		恩格待 (禮部威勅)		阿思哈胡里(秘書院)								追尊皇帝四世詔, 賜緞勅
인조27 (1649)	08.20	09.05	09.18	10.07	10.17		甫大樂古(戶部 啓心郎)		烏許(禮部啓心郎), 斜大(蝦察), 庫哈峰谷(戶部愛什喇)								冊封國王誥, 誥命彩幣勅, 賜國王王妃詔, 賜祭仁祖大王文, 祭幣
효종01 (1650)	01.28		02.24	03.07	04.22		巴哈納(戶部尙書) 祁(內院太學士)		曹(圖章京), 蠅(蝦) 青(學士), 谷(戶部愛什喇)								飭諡祭兼謝禮單欠式 倭情徑奏貢布請緩勅, 攝政王通婚勅
	04.05			04.19			梭紅										攝政王議婚勅, 送禮物勅
	04.10	04.25	04.28	05.12	05.22		車元(戶部右侍郎)		賈, 察								攝政王定婚勅, 攝政王定婚後再送禮 物勅
	07.20	08.11	08.23	09.06	09.13		藍所伊 (禮部侍郎)		布, 介								飭虛張倭情勅
	08.25	09.08	09.19	10.04	10.12		額色黑(刑部啓 心郎)		資功(學士)								追尊攝政王母爲皇后 詔, 賜緞勅
	윤11.	不遣	12.06	12.12	12.18		達(禮部侍郎)		阿思哈大馬(內院)								

	윤 11.25	1651 01.12	01.26	02.11	02.18	霽(吏部啓心郎)	阿思哈大士	追尊攝政王詔, 賜物勅
	12.12	12.29	1651 01.06	01.24	02.06	阿思哈 (禮部尙書)	阿思哈大察(內院)	頒親政詔, 尊諡皇太后詔, 親政賜物勅, 尊諡賜物勅, 李曼等復職斥和臣登 免罪勅
효종02 (1651)	01.11	01.	02.17	03.04	03.15	霽(啓心郎)	特(兵部侍郎) 阿思哈易(內院) 谷(戶部副理官)	尊號皇太后詔, 賜緞勅
	01.22	윤 02.22	윤 02.29	03.17	03.27	奚(工部理事官)	巴(戶部副理官)	追討攝政王詔
	01					季(刑部尙書)		皇太后祔廟詔, 賜緞勅
효종03 (1652)	08.20	09.16	09.28	10.15	10.27	涂(吏部侍郎)	葉(內院學士) 訥(都察院副都御史) 孤(戶部理事官)	尊號皇太后詔, 冊立皇后詔, 賜緞勅
	04.29	05.06	05.25	06.11	06.23	易(刑部右侍郎)	黑(內院學士), 涂(蝦)	慰問討逆勅
효종04 (1653)	11.07	不遣	11.28	12.18	1653 01.04	蘇納海(學士)	胡儉(梅勒章京) 谷兒馬紅(理事官)	查審犯越勅
	09.22	10.11	10.23	11.10	11.20	郎(禮部尙書)	灘(蝦), 郎(蝦)	廢皇后勅
	05.13	06.08	06.25	07.15	07.29	巴(刑部尙書)	圖(都察院正黨) 千(內院學士), 方	按查收用斥和三臣事勅
	06.18	08.11	08.17	09.11	09.22	阿思哈	奚(內院學士) 坑(吏部啓心郎)	繼立皇后詔, 尊號皇太后詔, 賜物勅

* 전거: 『同文彙考』 補編, 詔勅錄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조 21년부터 인조 27년까지 7년 동안 17회, 효종 즉위년부터 효종 4년까지 4년 동안 16회의 청사 출래가 있었다. 인조말엽에 평균 2.5회, 효종 초반에 연평균 4회 출래한 것으로 청의 대조선 외교활동이 활발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우호적인 성격도 있지만, 조선을 압박하는 청의 정책 때문이었다.

청은 입관이후 중원장악 및 체제정비에 몰두했다. 이러한 청의 통치 방식을 접한 조선은 청의 관심이 중원에 있다고 판단하고, 원만한 조·청관계의 전개를 기대했으며, 일본의 경우도 관백이 3대째 이어오면서 국내통치에 전념한다고 판단했다.⁶⁰⁾ 인조 27년(1648),

60) 『인조실록』 권49, 인조 26년 10월 갑오; 권50, 인조 27년 2월 임인.

‘追尊皇帝四世詔’와 ‘賜緞勅’을 전달하기 위해 출래한 禮部威勒 恩格待와 秘書院의 阿思哈胡里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인조는 왜정이 의심스럽다고 전제하고 전란이 발생하면 청의 즉각적인 구원을 요구하자 청사는 천하가 평정된 시점에서 조선을 구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인조뿐만 아니라三公도 館所에서 청사에게 왜정이 염려스러워 城池와 兵甲을 정비하여야 함을 강조했다.⁶¹⁾ 당시 조선은 성지와 해자의 수축을 위한 방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러나 정축년 詔諭와 청의 위세로 인하여 조선의 국방강화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⁶²⁾

비록 인조말년에 시도된 국방강화의 노력은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일본의 위협을 언급했으며, 이를 이용하여 국방강화의 명분을 만들고자 했다. 인조의 승하와 효종의 즉위과정에서 청의 조제사로 戶部啓心郎 甫大樂古, 禮部啓心郎 烏許, 蝦察 斜大, 戶部愛什喇 庫哈峰谷 등이 ‘冊封國王詔’, ‘誥命彩幣勅’, ‘賜國王王妃詔’, ‘賜祭仁祖大王文’, ‘祭幣’ 등을 가져오자⁶³⁾ 적극적으로 일본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謝恩兼冬至正朝使 仁興君 瑛, 李時昉, 姜與載 등을 파견하여 왜정을 청에 전달했다.

이때 조선의 주장은 당시 전달된 주문을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⁶⁴⁾

61) 『同文彙考』 補編, 卷9, 詔勅錄. 太祖承天廣運聖德神功肇紀立極仁孝武皇帝를 하늘에 配享하고, 태조 이상의 四世를 追尊해서, 高祖 澤王은 肇祖原皇帝로, 曾祖 慶王은 興祖眞皇帝로, 祖 昌王은 景祖翼皇帝로, 父 福王은 顯祖宣皇帝로 추증했다. 또한 천하에 대사령을 선포하고 詔勅과 채단을 내렸다; 『인조실록』 권50, 인조 27년 1월 기묘; 임오.

62) 『인조실록』 권50, 인조 27년 3월 병자.

63) 『同文彙考』 原編, 卷1, 封典1, 己丑 請世子嗣位奏; 卷5, 哀禮1, 告仁祖大王昇遐表.

64) 본 주문은 『동문회고』에 수록된 문서를 외교문서의 판독상 편의를 위하여 필자가 임의로 끊어 읽기한 것이다.

朝鮮國王(臣) 姓(諱) 謹奏 爲敢陳小邦情形 冀蒙裁察 以備倭寇事
議政府狀啓 據

慶尙道觀察使李粵 馳報 備

東萊府使盧協 牒呈

節該

近年以來 倭情之可虞者 甚多 而上年秋 爲因接待 差倭等項 多大浦僉使 趙光瑗 騎馬入館 衆倭謔稱劣待 鞭打差官 語甚不遜 且 對馬島主 例與本府官 互相通書 今稱島主入往江戶 其留島奉行人等 乃敢通書本府 謝其上年 鞭打公差之罪 而聽言 觀色 顯有探試之意 島主入往 雖未知委的何事 形迹亦甚荒唐 及節次出來倭差人等 恐喝之言 不一而足 前頭事機 委屬可慮

等因 具呈

爲此合行 馳報

等情 具報

據此 臣等竊照 島倭之納款通信 今已五十餘年 一向効順 無有違誤 自戊寅年以後 惹生另 樣事端 歲增年滋 約條外需索 非止一二 而無以應副 則大加怨恨 凡有往復文書中 本國贈 給物件 從前循例使用之字 輒必改下 關白素稱 日本國王 今改大君 而留館倭人等 又以密 書來示譯官 語意殊甚悖逆 節節層加 已極可駭 不期近者 緣邊官騎馬一節 執稱慢侮 辭極 凶謔 雖將接待差官 已爲拿致重究 而館倭之驅辱公差 亦是無前之事 加以馬島奉行人等 茲 敢僣然通 書于邊臣 稱以島主入往江戶 而且本國年例 所給之米 在前館倭 入送島中 以資 其生計 而今皆儲峙館所 如有所待 狡詐之態 有不可測 其間情節 與前大異 可疑之端 難以 悉舉 且其所謂耶蘇宗文 卽 倭國之叛賊也 此類混迹於漢人商船 出沒於倭國沿海地方 倭國 深以爲憂 曾請本國 如有漂到商船 卽令捕送 而今此漂到漢人 不送于咫尺倭館 直爲解送上 國 其畜憾於我 比前必甚 前後事情 已生罅隙 若不預爲料理 將恐難以應猝 目今國內各處 城池 軍兵器械 無一可恃 脫有邊警 勢將瓦解 網繆之策 不可不預講 合無備將前因 聞奏朝 廷 明降施行

等因 具啓

據此 臣竊照小邦 自經壬丁之變 各處城池 皆已墜廢 至於軍兵 不爲訓練者 今亦十餘年矣 蠢彼倭情 萬分可慮 倘遇緊急 計沒奈何 唯有赴懇大朝 望其東救 而第念 東萊之去國都 未 滿十日程 國都之去皇京 道里寫遠 小邦使价控訴之際 大朝兵馬 調發之間 將何城池 將何軍 兵 以待援兵之來救乎 今欲修築訓練 以爲自守之計 而曾蒙禁命 亦不敢率意舉行 此臣所以 與在廷諸臣 日夜憂悶 而不得善策者也 亦恐小邦一被兵禍 無所倚靠 舉國奔波 重貽皇上 東 顧之憂也 伏乞皇上 遵先皇存繼之仁 念古聖陰雨之戒 特察奏內情節 指示自強之道 而使小 邦 得免臨危 顛沛之患 不勝幸甚 緣係敢陳 小邦情形 冀蒙裁察 以備倭寇 事理云云(云云並式見 順治乙酉陳奏 後 倣此)

順治 六年 十一月初 日

* 전거: 『同文彙考』原編, 卷78, 倭情.

위 奏文은 조선국왕 명의로 황제에게 아뢰는 형식이며, 조선국왕은 ‘의정부 장계’, ‘경상도관찰사 이만 치보’, ‘동래부사 노협 첩정’을 근거로 작성됐다.⁶⁵⁾ 동래부사의 첩정은 왜관에서 다대포첨사 조광원이 횡포를 당하고, 관례적으로 동래부와 서신교환을 하던 대마도주가 이유없이 관백에게 갔으며, 차정된 왜차의 공갈이 심하여 앞으로 일이 염려스럽다는 내용이었으며, 경상도관찰사는 이를 의정부에 치계했다.

의정부는 화호한 뒤 공손하던 일본이 최근에 과다한 물품을 요구한 점, 관백을 대군으로 바꾸는 등 외교문서의 내용개정을 요구한 점, 조선에서 지급되는 쌀을 왜관에 보관하여 사단에 대비한 혐의, 일본에서 금지하는 예수종문의 수포를 강조하면서 표류한 한인을 왜관으로 보내지 않고 청에 보낸 점 등으로 갑작스런 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선은 성지와 군병과 기계가 부실하여 변란에 대비할 수 없으니 국방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결국 일본의 동태가 염려스럽기 때문에 청의 구원을 기다리는 동안 방비할 군사적 강화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조선의 주문은 1650년 1월 11일에 순치제에게 보고되었다. 내부적인 권력쟁탈과 중원의 반청운동에 대한 진압, 통치체계의 강화 등으로 조선의 반청분위기에 대한 의구심이 높았던 청은 조선의 기축조약 위반을 강하게 질책하고 조선의 요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시행했다.⁶⁶⁾ 청은 조선사신을 감금하고, 사신을 대상으로 조선의 의도를 조사했다.⁶⁷⁾ 이어 ‘飭諡祭兼謝禮單欠式倭情徑奏貢布請緩勅’, ‘攝政王通婚勅’ 등의 외교문서를 지참한 조사목적의 사신을 조선에 파견했다. 왜정을 통한 국방강화 요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의 자세에 대해 당황한 조선은 청사출래에 대비하여 영의정

65) 『同文彙考』原編, 卷78, 倭情, 己丑 陳請築城備倭奏.

66) 『정세조실록』 권47, 순치 7년 1월 을축; 임오.

67) 『효종실록』 권3, 효종 1년 2월 신묘.

李景奭을 遠接使으로, 예조판서 吳竣을 別宴慰使로 삼아 사태를 무마하도록 했다.⁶⁸⁾

최고위급인 戶部尙書 巴蛤納, 內院太學士 祁靑古, 圖章京 曹, 蝦蟇, 學士 靑, 戶部愛什喇 谷 등 6명의 대단위 사신으로 6명이 출래한 전례가 없었던 점, 출래한 청사가 2월 24일에 압록강을 도강한 뒤 3월 7일 서울에 입성한 점 등을 통해 청에서 사태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청사의 조선압박은 이들이 돌아간 4월 22일까지 약 2달 동안 지속되었다.⁶⁹⁾ 비록 정식 청 관원이며 사신의 한명이었지만 조선출신 역관 鄭命壽가 고압적인 자세로 영의정을 비롯한 정승, 육조, 양사, 승지 등을 취조한 점은 조선 지배층의 치욕과 반청감정을 더욱 고조시켰다.⁷⁰⁾

청사가 문제시 삼았던 조항은 ① 조제에 대한 사인과 예물이 없음, ② 섭정왕의 부의에 사은하지 않음, ③ 왜정을 빌미로 군비를 강화하고자 함, ④ 세공을 임의로 줄여줄 것을 요구함, ⑤ 청사출래시 접대가 소홀했던 점, ⑥ 표문에 사용된 문구의 잘못 등이었다.⁷¹⁾ 비록 6가지의 많은 조항이 있지만, 대부분 명분상 추궁이고, 가장 실질적인 것은 왜정을 통한 군비강화를 추궁하는 것이었다. 조선의 반청의식을 경계하던 청은 우호적이었던 김자점 등 인조대 舊臣이 효종 즉위이후 정계에서 쫓겨난 반면 김상헌 등 반청인사가 엄하게 징계되지 않은 점을 문제삼고, 구체적으로 김자점, 원두표, 구인후, 이시백, 구인기 등 5명을 언급하며 이들에게 국사를 맡기도록 강요했다.⁷²⁾ 또한, 조선에 만연한 반청의식이 왜정으로 표현

68) 『인조실록』 권3, 인조 1년 2월 신해.

69) 『同文集考』 補編, 卷9, 詔勅錄.

70) 『효종실록』 권3, 효종 1년 3월 신유.

71) 『同文集考』 原編, 卷41, 飭諭. 庚寅 飭諭祭兼謝禮單欠式倭情徑奏貢布請緩勅.

72) 『효종실록』 권3, 효종 1년 3월 정사. 당시 효종도 김자점이 청과 연관된 점을 의심하여 김자점을 파직하고, 아들 金鍊과 金弼을 外職으로 보내어 청과 내통하지 못하도록 했다.

되었다고 보고, 구체적으로 왜정을 빌미로 군비강화의 주장이 형성된 과정을 추적하고자 했다. 외교문서 자체에 언급된 사항을 중심으로 관련인물을 심문하여 최초 보고자 동래부사 盧協, 경상도관찰사 李旻, 의정부의 영의정 이경석 등을 징계하도록 하고, 주문 작성의 실질적인 주무장관이었던 예조판서 趙綱 등의 책임을 추궁했다.

조선은 관련인물들로 하여금 주문에 기재된 범주에서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내부적 결론을 내리고 청사의 심문에 임했는데, 이는 자칫 개인적인 공명심으로 심문에 임하여 국왕명의로 발급된 주문의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조선은 개별 조항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을 했다. 왜정에 대해서는 일본이 通信한 뒤 의심스러운 점이 많고, 조선의 방비는 허술하여 청 병부에 자문했는데, 일본정세를 수시로 보고하고, 군비강화는 정식 문서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기에 작성된 것이며, 참람되게 요구하게 된 과정에 관련된 인물은 엄하게 징계하겠다고 해명했다. 弔祭에 사은이 없었던 점은 常例로 하면 책봉과 조제에 각각 두 번의 使行이 있어 개별적으로 사은했지만, 당시는 한 번의 사행이 있었기에 겸행하여 사은한 것이라 해명했다. 기타 歲貢감축을 요구한 것은 재해가 많았던 사정을 언급하고, 청사에 대한 접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며, 표문의 잘못된 문구는 향후 査對를 강화하여 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청사는 조선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통하여 외교적 우위를 확보한 상황에서 섭정왕의 혼인문제를 추진했다. 섭정왕의 妻 元妃가 1649년 12월 사망하자 정적이었던 肅親王 豪格의 妻를 취하고, 조선에 대해서 공주를 배필로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⁷³⁾ 황제의 권력을 능가하는 실세 섭정왕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자 취한 조치로 당시 출래한 청사는 조선에 대한 압박을 통해 조선왕실과 섭정왕의 혼례를

73) 『同文彙考』原編, 권16, 陳慰. 庚寅 慰攝政王夫人喪表.

성사시키고자 노력했다. 외교적으로 곤란에 빠졌던 조선은 선택의 여지없이 錦林君 李愷胤의 딸을 義順公主로 삼아 혼사를 성립시켰다.⁷⁴⁾ 결국 청사의 귀환과 동시에 의순공주는 청으로 떠나게 되었으며, 혼사과정에서 사대부가문의 조혼이 만연하는 등 사회문제를 발생시켰다. 왜국과 조선은 평소에 서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원한이나 전쟁 따위의 일이 없다는 청사의 보고를 받은 순치제는 ‘飭虛張倭情勅’를 조선에 보내어 강하게 질책했다. 최종적으로 조선은 효종 1년(1650) 10월 20일자로 황제에게 왜정관련 사건에 대한 주문을 전달했다.⁷⁵⁾

병자호란이후 조·청관계에서 조선은 왜정을 새로운 외교사안으로 부각시키고, 일면 강대국 청의 요구에 따라 일본의 정세를 보고하면 서도 병자호란이후 제한되었던 군비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 이러한 조선의 외교목적은 평소 조선의 사정을 명확히 파악하고, 평소 반청분위기를 의심하던 청에 의해 강력한 외교적 압박을 받게 됐다.

청의 事審使行 파견과 조사작업은 효종즉위 초기에 대신들이 청사에 의해 심문을 받는 상황에서 효종의 정치적 권위는 상당히 손상을 받았으며, 섭정왕과 조선왕실의 혼사가 성립되는 등으로 형식상 청의 책봉국으로서 권위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국내적으로 효종 2년 11월에 인조후궁 貴人 趙氏의 저주사건이 발생하여 조사과정에서 金自點의 역모사건 전모가 드러나고 역옥으로 확대됐다. 김자점 역옥은 그 성격상 청과 관련된 것으로 이형장이 깊이 관여됐으며, 조선은 당시 조·청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정명수와 연관된 것으로 인식하여 청에 역모와 역옥 전말을 기록한 주문을 전달했다.⁷⁶⁾ 경제적으로 청은 조선을 압박하여 함경도 개시를 요구했으며, 회령개시를 통하여 소, 무명, 백지,

74) 『同文彙考』原編, 권79, 雜令. 庚寅 攝政王通婚勅.

75) 『同文彙考』原編, 권78, 倭情. 飭虛張倭情勅; 辨明倭情飭諭及一表兼謝恩奏.

76) 『효종실록』 권8, 효종 3년 4월 을해.

가마, 보습 등을 교역하는 등 국경무역의 길을 열어놓게 됐다.

이상의 인조말엽부터 효종초반까지 왜정을 둘러싼 조·淸관계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직 남명정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조선은 이전의 대명관계와 달리 새로운 대淸관계를 형성하고 전개하게 됐다.

첫째, 왜정사안이 새로운 외교사안으로 등장했다. 조·淸관계에서 왜정이 등장하는 것은 임진왜란을 계기로 등장했지만, 구체적인 외교사안으로 정리되지는 않았다. 명대에 왜정은 단순히 명의 요구가 있으면 조선이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형태였지만,淸대에는 왜정이 封典, 陳奏 등과 같은 정식 외교사안으로 등장했다.

청은 북중국을 장악한 상황에서 북쪽의 몽고에 대한 위무와 조선·일본 등에 대한 단속을 필요로 했다. 직접적인 교류가 없었던 일본의 정세변화는 청의 입장에서 정성공세력과 연결될 개연성도 있어 관심이 집중되었기에 조선을 통하여 이를 파악하고자 했다. 수시로 발생하는 표류민, 예수종문의 등장 등이 복잡하게 연결되면서 조선을 중심으로 청·일본이 관련된 외교사안으로 왜정이 설정됐다.

둘째, 조·淸, 조·일, 청·일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외교사안이었다. 조·일관계에서 파악된 정보를 조선은 실질적인 군비강화의 노력으로 연결시켜 소현세자의 귀국, 군비강화 등에 외교적으로 활용했다. 소현세자의 귀국은 청 정세의 변화로 성취되었지만, 군비강화는 조선의 반淸경향에 대한 반발로 청의 대조선 강압정책이란 역풍을 맞았다. 이 과정에서 강압적인 청사의 행동과 청의 요구는 조선의 반淸의식을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병자호란이후 왕권의 위협을 받아 강력한 반淸·군비강화를 추진하지 못했던 인조에 반하여 효종은 권세가 섭정왕의 죽음과 순치제의 통치기반 강화 등 청 내부의 변화를 기회로 실질적인 군비강화를 추진했다.

셋째, 청의 강압적인 대조선 감시체제를 보여준다. 정명수를 중심으로 한 인물과 다양한 감시경로를 통하여 청은 조선의 정세변화 및 반청인식을 감시했다. 조선의 정치·외교상황은 정명수에 의해 청 정부에 보고됐고, 정명수의 이러한 활동은 청의 입장에서 충순한 인물로 평가되어 정명수는 승덕 말년에 牛臬章京으로 승진했다.⁷⁷⁾ 조선은 청의 강압적인 감시와 간섭으로 각종 정책의 수립에 많은 제약을 받았으며, 병자호란이후 정치적 위상이 손상된 인조는 척화파 배척과 친청파 반정공신의 중용 등 친청 행보를 보였다.⁷⁸⁾ 이에 비하여 효종은 왜정사안을 통하여 청의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친청파를 구분하고, 김자점의 모역사건이후 이들을 제거하고 본격적인 군비강화를 추진했다.⁷⁹⁾

넷째, 명대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외교문서 자체의 외교문제화 경향이다. 청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되자 청은 사행의 궁극적인 형식이자 내용이었던 외교문서에 있어 조·명관계보다 한층 강화된 수준을 요구했다. 인조대 왜정관련 주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외교문서 자체의 문제는 이후 조·청관계에서 주요 현안으로 등장하는데, 숙종대에 가장 빈번하여 조선은 외교문서에 대한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했다. 결국 정조대에 외교문서에 대한 전면 정리작업이 이루어져 『동문회고』라는 외교문서집으로 정리됐다.⁸⁰⁾

77) 『청세조실록』 권2, 승덕 8년 9월 계묘.

78) 한명기, 「병자호란 패전의 정치적 파장 -청의 조선 압박과 인조의 대응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19, 2003. 73~82쪽.

79) 차문섭, 『조선시대 군제연구』, 단대출판부, 1995. 254~270쪽.

80) 김경록, 「조선후기 동문회고의 편찬과정과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32, 2005. 210~217쪽.

5. 맺음말

요약과 앞으로 연구과제를 언급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후금은 지역적, 인적 한계를 효율적인 사회체제의 정립으로 극복하고, 요동을 장악함으로써 대국으로 발전의 기초를 확립했다. 중원진출이전에 배후지역의 정리를 위해 조선을 침략하여 정묘호란으로 강도약서, 평양약서를, 병자호란으로 詔諭를 제시했다. 정치적으로 조선을 제압하고 군사·경제적인 목적에서 쇄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자를 인질로 했다. 이후 조·淸관계에서 세자의 귀국은 현안과제로 등장했으며, 정명과정에서 필수적인 경제적 역할을 조선에 요구했다. 조·淸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는 청 태종의 죽음과 이후 실권자 섭정왕의 죽음이었다.

명·청교체는 조·일관계에 변화를 초래하여 새로운 화친체제를 형성했다. 또한, 조·淸관계에서 굴욕적인 상황은 조·일관계의 안정을 국가안위에 절대적인 선행조건으로 요구했다. 변화되는 왜정에 대해 조선은 위협보다는 조·淸관계를 포함한 국제체제와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오히려 왜정을 활용하여 조·淸관계를 개선하고자 했다.

『同文彙考』는 정조 12년에 출간된 初編 60冊과 그 후에 속간된 續編 36冊으로 구성되며, 왜정은 원편에 수록되어 있다. ‘倭情’사안은 인조 22년(1644)부터 영조 39년(1763)까지의 10건 소항목에 56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수록된 문서의 내용은 대부분 관백의 신립이지만, 인조대에서 효종초까지는 일본의 정황을 다양하게 청에 통보하는 내용이다.

외교문서는 발급명 의와 접수명 의를 통하여 외교적 입장과 관계설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효종 이후 관백의 신립으로 왜정의 내용을 한정할 점은 조·일관계에 제약조건이 되었던 청 중심

국제질서 하에서 주도적인 조·일관계를 전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된다. 이는 실질적인 조·일관계에 관련된 문서는 『동문회고』 부편으로 정리함으로써 조·청관계, 조·일관계를 원활히 운영했다.

입관을 전후하여 청은 조선에 군사·경제적 요구를 강화했으며, 세자귀국이라는 현안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은 다양한 외교활동을 취했다. 조·청관계의 원활한 전개와 표류일본인, 예수종문의 수포요구 등으로 복잡하게 전개되는 조·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선은 내부적으로 심기원반란사건을 정리하고, 청에 진주하면서 왜정자문을 전달했다. 왜정자문의 전달이 가지는 의미는 사신 김자점의 외교활동에서 확인되는데, 세자의 귀국을 요구하면서 청이 주목하던 왜정을 전달함으로써 순치제의 방비를 엄중히 하라는 신칙을 받았다. 청 정계변화, 북경입성, 조선의 적극적인 요구 등으로 세자의 귀국은 달성됐다. 조·명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를 준용 이외에 새로이 왜정이라는 외교사안을 강조하여 조·청관계를 전개했다.

북중국을 장악한 청은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몽고, 조선, 일본 등 배후지역의 확고한 제압이 필요하여 강압적인 대조선 정책을 취했다. 조선은 효종의 즉위를 계기로 반청인식을 바탕으로 군비를 강화하고자 하여, 왜정을 명분으로 군비강화를 요구했다. 조선의 반청분위기에 대한 의구심에서 청은 기축약조 위반을 강하게 질책하고 조사작업을 진행했다. 유래없는 6명의 사신이 파견되어 고압적인 자세로 대신을 취조함으로써 조선 지배층의 치욕과 반청감정을 고조시켰다. 조제의 사은문제, 왜정을 명분으로 군비강화 요구, 세공축소 요구, 표문문구의 오류 등을 문제삼아 조선의 반청인사를 제거하고자 했던 청은 섭정왕과 조선왕실의 혼사를 요구했다. 이는 청 정계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섭정왕 죽음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됐다.

조선은 조·淸관계에 왜정을 새로운 외교사안으로 설정하고, 초기 조·淸관계에 다양하게 활용했다. 단기적으로 반청분위기를 의심하던 청에 의해 강력한 외교적 압박을 받아 즉위초 대신이 추궁 받고, 김자점의 모반사건 등 정치적 권위에 손상을 받고, 섭정왕과 혼사를 맺어 대외적으로 청의 책봉국으로서 권위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장기적으로 국경개시를 통하여 국경무역의 길을 열어놓고, 조·淸관계가 조공관계로 전형화됐다. 한편, 명·淸교체기 왜정중심으로 살펴보면, 왜정사안이 새로운 외교사안으로 등장하고, 조선의 반청의식이 실질적인 군비강화의 노력으로 연결됐으며, 외교문서 자체가 외교문제화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대외관계사 연구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접근할 수 있다. 편찬자의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반영되고, 등록화된 연대기자료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1차 사료가 외교문서라는 점은 명확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외관계사 연구는 외교문서 연구에서 출발해야 한다. 구체적인 외교정책의 형성과정과 외교시스템을 분석하고 외교활동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체계적인 외교문서 정리작업과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원고투고일: 2015.1.8, 심사수정일: 2015.2.12, 게재확정일: 2015.2.24]

주제어 : 17세기, 왜정, 군사외교, 명 중심 국제질서, 청 중심 국제질서, 조淸관계, 병자호란, 북벌계획, 효종, 나선정벌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Joseon dynasty and Qing empire
and Military · Diplomatic use of diplomatic item
'Whejung(倭情)' in the 17th century

Kim Kyeong-lok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the differences between Joseon-Japan relations and Joseon-Qing relations in order to summarize military diplomacy among them. The change of North-East Asia situation in the transition period from Ming to Qing forced it to establish new relations with Japan and Qing. In the 17th century, Joseon had a resumption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Japan. Joseon also had experienced couple of historical issues such as these. These are what did not want to send troops overseas, Injo's restoration and Joseon's keep pro-Ming policies, the Qing's Invasion of Joseon in 1627(丁卯胡亂) and 1636(丙子胡亂), from an international order of centering around Ming to centering around Qing etc.

In the process, The military intelligence for 'Whejung'(倭情) emerges as foreign affairs issues on diplomatic relations among Joseon, Qing and Japan. 'Whejung' means information of Japan, and it was the military information about the internal situation of Japan after 'Imjin War'(壬辰倭亂), about military conflict over the Christ Church. Joseon gave notice of the 'Whejung' in Qing, for the Joseon's legitimate military buildup. When the stable relations with Japan emerged as the prerequisite in the middle of pol-mil crises between Joseon and neighboring Ming and Qing, Joseon took advantage of 'Whejung'(倭情) intentionally for its diplomatic policy.

While Joseon was controlled strictly in terms of military affairs including reinforcement by the Qing emperor after 'Byungjahoran'(丙子胡亂). Joseon argued that it needed to build-up its own military forces

in order to defend the invasion of Japan through providing ‘Whejung’(倭情) to Qing. And this is one part of an expedition to conquer the north’s plan(北伐計劃) by King Hyojong(孝宗). However Qing afraid of Joseon’s military buildup and has pressured diplomatically. Through this study, it is acknowledged that Joseon faced hard truths and took strong steps. Joseon would not want to get into a bitter fight with Qing so accepted Qing’s demands without a murmur.

Joseon would try to use of Japan’s political instability in order to it’s own military build-up in the middle of the international order of centering around Qing. In the end, Joseon’s diplomatic efforts did not succeed by the Qing’s diplomatic pressure but, the relation of Joseon-Qing had a new shift with the Qing-Joseon expeditions to the Amur(羅禪征伐) after years.

Key words : 17th century, Whejung(倭情), military diplomacy, an international order of centering around Ming, an international order of centering around Qing, the relationship between Joseon dynasty and Qing empire, the Qing’s Invasion of Joseon in 1636(丙子胡亂), an expedition to conquer the north’s plan(北伐計劃), King Hyojong(孝宗), the Qing-Joseon expeditions to the Amur(羅禪征伐)

